



부산남구신문

호외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호 발행·편집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608-701)

외 ☎ 607-4071 / FAX 607-4069

선	기 관 의 장
람	

제330호 2013. 6. 21.(금)

조 례

- ▶ 조례 제992호(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2
- ▶ 조례 제993호(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6
- ▶ 조례 제994호(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9
- ▶ 조례 제995호(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10

규 칙

- ▶ 규칙제742호(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4
- ▶ 규칙제743호(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24
- ▶ 규칙제744호(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30

훈 령

- ▶ 훈령제282호(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34

공 람								
--------	--	--	--	--	--	--	--	--

조 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13년 6월 11일 제218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2013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992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내용 중 대연제2동주민센터 란을 삭제하고, “우암제1동주민센터”를 “우암동주민센터”로 하며, 우암제2동주민센터 란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통합 전 대연제1동, 대연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에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청소년지도위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 또는 3년간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013. 7. 1)

동 명	동장 정수	동명	관할구역
대연동	5	대연제1동	대연동 324-327, 330-336, 344-350, 352-358, 367-379, 635, 638, 639, 852, 865-867, 870-871, 873-879, 881, 882, 884-899, 901, 903, 917, 977, 980-989, 991, 992, 1002, 1003, 1006-1010, 1202의39, 1202의41, 1204의17, 1204의39, 1216-245, 1258, 1604-1628, 1632-1635(단,1633의10, 1633의79, 1633의95, 1633의97 제외),1306-1321, 1721-1740, 1746-1755, 1756-1757, 산158의2, 산160의1-산160의7, 산160의101, 산164의2, 산164의31, 산165의9, 산166의1, 산166의6, 산166의7, 산167의26
		대연제3동	대연동 1-280(단,133의1,133의41, 280의1-280의4 제외), 300-314, 360-365, 388-634(598-27, 33, 44, 66, 69제외), 637, 640-720, 722-728, 905-913, 1808-1842(단,1810-1814, 1814의1, 1815, 1815의1, 1816-1818, 1818의1, 1819, 1828,1829,1837의1,1842의2 제외) 1849-1855,산1-산49, 산51-산56, 산101-산114, 산115의1, 산115의4, 산115의5, 산204, 산222-산229 (단, 산223제외)
		대연제4동	대연동 729-779, 819, 841-848, 918-971, 990, 1013-1195, 1198, 1203의198, 1204(단, 1204의17, 1204의39 제외) 산180-산185, 산190-산193, 산201-산215(단, 산204제외) 산223
		대연제5동	208의1-280의4, 281-299, 316-323, 328, 329의1, 329의3 329의4, 329의6, 329의10, 329의14-329의16, 329의18-329 21,329의28, 383 -384, 1281-1299, 1344-1534, 1535의1,1535의2, 1535의4-1535의8, 1535의15, 1536의3, 1536의4, 1536의6, 1536의8, 1536의10, 1536의23, 1536의34, 1536의50, 1536의51, 1536의54, 1536의55, 1536의59, 1536의60, 1536의66, 1552-1573(단, 1573의1, 1573의3 제외), 1611- 1684, 1741-1745, 1759, 1760, 산50, 산57-산63, 산68, 산69-산100, 산115의2, 산115의3, 산115의8, 산115의11, 산115의16, 산115의17, 산116의2, 산116의4, 산120, 산121, 산124-산127
		대연제6동	대연동 1246-1255, 1265-1280, 1535의9, 1535의10, 1535의12, 1535의38, 1535의58, 1536(단, 1536의3, 1536의4, 1536의6, 1536의8, 1536의10, 1536의23, 1536의34, 1536의50, 1536의51, 1536의54, 1536의55, 1536의59, 1536의60, 1536의66 제외), 1539-1551, 1574- 1603, 1712, 1758의1-1758의11, 1758의16, 1758의18, 1761-1807, 산64-산66, 산128-산144의3, 산144의11, 산144의136, 산148의8, 산148의9, 산148의16-산148의18, 산148의21, 산148의26, 산148의28, 산148의29, 산148의31, 산148의33-산148의37, 산148의40, 산148의42, 산149, 산151의2, 산151의3, 산151의12, 산151의14, 산151의18, 산152의1, 산152의5, 산153의5, 산153의11, 산153의12, 산153의17, 산154의2

동 명	동장정수	동명	관할구역
용호동	4	용호제1동	용호동 38-41, 50, 51, 66, 75-83, 90-361(179의11-179의13 포함), 369, 370, 379, 380, 386, 387, 395, 396, 406-409, 413-424, 479,483, 484, 487, 649 720(단, 720의12, 720의34, 720의39, 720의42-720의44 제외), 721-736, 907의1, 907의3, 907의11,907의14,907의15,907의17, 917, 923, 924-924의18 925의1, 926의2, 927의2, 928-935, 산43-산70
		용호제2동	용호동 495, 496, 516, 517, 521-532, 542-554, 559-564, 565의1, 566, 776, 866-892, 895의1, 903, 907의5-907의7, 907의9, 936 942, 산89의7, 산92, 산93, 산96 산100, 산101, 산116의1, 산117, 산140-산178, 산180-산190, 산193, 산195-산221
		용호제3동	용호동 1-37, 42-49, 52-65, 67-74, 84-89, 363-368, 371-378, 382-385, 388-394(단, 390의57, 390의58 제외) 398-405, 410-412, 425-478, 488-494,497-515, 519,520,산1-산42, 산104-산115, 산122-산136
		용호제4동	용호동 480-482, 485-486, 533-541, 555-558, 720의12, 720의34, 720의39, 720의42-720의44, 755, 894, 895, 895의2, 896-902, 산71-산73, 산76-산87, 산89의9, 산222-산224, 산227-산236, 산238, 산240-산252
용당동	1	용 당 동	용당동 일원(단, 546의5, 546의14, 546의15 제외)
감만동	2	감만제1동	감만동 72의4-616(단, 589, 590, 600제외), 산31의10-산43의21(단, 산40 5, 산40의6 제외), 산47-산72의1
		감만제2동	감만동 1-5, 8, 11-22, 26-48, 51, 52, 54, 57, 62, 65, 589-590, 600, 618-622, 산4, 산5, 산7-산12, 산14-산18, 산22, 산23, 산25, 산28-산30, 산40의5, 산40의6, 산44-산46
우암동	1	우암동	우암동 1-121, 122-128의1, 129-178, 179-181, 183, 184의2-184의358, 185-264, 산1-64

동명	동장정수	동명	관할구역
문현동	4	문현제1동	문현동 1-126의9, 127의2-127의37, 127의55-127의79, 127의85-127의89, 127의91, 127의95-127의105, 136의8, 368-369, 385의6, 386-392, 397의1, 426의15-426의33, 426의158, 426의246-426의248, 426의268 -426의280, 426의285-426의298, 442의4-447의16(단, 444의8, 446의5, 447의11 제외), 449의1-465의8, 466의1, 468의1, 468의37, 475의6, 478 -11, 479의1, 479의3, 480의2, 481, 481의26-481의31, 488의2, 502의3, 506의4, 506의49 506의79, 506의104-506의275, 506의282, 506의285 506의288, 506의291-506의337(단, 506의334제외), 506의341-506의534(단, 506의518제외), 553의7, 553의30-553의32, 553의57, 553의59, 553의60, 555-557의108, 558의17-558의20, 650의1-650의6, 650의11-650의33, 650의35-650의49, 650의51-650의67, 655의4-655의120, 산1-산16, 산18-산23의6, 산26의12-산32의1, 산33의2, 산36의4-산37의5(단, 산37의3 제외), 산46-산60의2, 산63의13-산85
		문현제2동	문현동 372, 380, 382, 390의134-390의138, 465의9-465의13, 466의3-466의21, 468-475(단, 468의1, 468의37제외), 478의12, 479의4-479의29, 481의4-481의25, 482의4-482의41, 483-487, 488의3-488의173 (단, 488-8-488의22, 488의128-488의130 제외), 489, 497, 500, 505, 506의1-506의102 (단, 506의2, 506의3, 506의49-506의79 제외), 506의276-506의289 (단, 506의282 제외) 506의334, 506의339, 506의518, 507의513, 515-520, 522-524, 528-544, 545의1-544 (단, 545의291-545의307 제외), 558 (단, 558의17-558의20 제외) 506-602, 603의1-603의98, 603의108, 604-609, 610의1-610의9, 610-17, 611-520, 522, 623의1-623의163, 623의172, 623의195, 624-627, 630-632, 633의8, 633의13, 633의17, 634-649, 650의7-650의9, 650의34, 650의50, 655의7, 666, 667, 672-682, 685, 687-813, 산24의1-산24의19, 산26, 산29의1, 산30의1, 산30의13, 산32의4, 산32의8, 산34의1, 산36-산36의3
		문현제3동	문현동 127(단127의2-127의37, 127의55-127의79, 127의85-127의89, 127의91, 127의89, 127의105제외), 139, 141-146, 154, 180, 183, 189-195, 202, 205, 212-245의4, 254의10-254의26, 256-269, 272-274,(단, 273의9, 274의23 제외), 309-313, 315, 359의1-359의19(단, 359의5 제외), 359의26, 361-362, 370-385 (단, 375의5, 385의6 제외), 393-428(단, 397의1, 426의15-426의33, 426의158, 426의246-426의248,426의268-426의280,426의285-426의298 제외), 444의8, 446의5, 447의11, 447의17, 651-654, 680의2, 산86-산93,산96-산103, 산195
		문현제4동	문현동 245의5-255(단,254의10-254의26제외), 271, 273의9, 274의23, 275-308, 314, 317-358, 359의5, 359의20-359의21, 359의30, 363-367, 375의5, 814-1225, 산106-산165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13년 6월11일 제218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2013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993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서관장”을 “도서관장,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도서관”을 “사업소”로 한다.

제11조제2항의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도서관) ①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도서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 및 기록류의 수집·정리·보존
2.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대출
3.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자료교류
4.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5.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설관리사업소) ① 국민체육센터, 백운포체육공원,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의 전담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장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 2. 백운포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 3.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나목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초생활보장계정 : 생활보장과장

제16조제1항제3호 중 “여성담당”을 “여성아동담당”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여성담당이 되고”를 “여성아동담당이 되고”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주민복지서비스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별표2]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치	관할구역
남 구 도 서 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7번길 61(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남 구 시설관리사업소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110(용호동)	부산광역시 남구 일원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13년 6월11일 제218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2013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994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중 5급란의 구분청 “19” 를 “20” 으로, 사업소 “1” 을 “2”로, 동 “19”를 “1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 6월 11일 제218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2013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99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2. 한부모, 새터민, 다문화 가정의 아동
3.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4. 부모의 취업 등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도서, 교재, 교구 등의 구입·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사업의 심의 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각종 사업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사업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아동 및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규 칙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742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민지원과장·주민복지과장”을 “주민지원과장·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도서관”을 “사업소”로 한다.

제9조 및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업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사업소장의 직급(제9조 관련)

사업소명	사업소장의 직급
남구도서관	지방사서사무관
남구시설관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제10조 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도서관”을 “사업소”로 하고, 분장사무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문화체육과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 평생교육과 분장사무 중 제11호를 삭제한다.
- 주민지원과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주민복지과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생활보장과”를 신설하여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시설관리사업소장
2. 경리관 : 시설관리사업소장
3. 지출원 : 시설담당
4. 수입금출납원 : 시설담당

② 부산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서관장 포함”을 “사업소장 포함”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도서관”을 “사업소”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서관은 도서관장”을 “사업소는 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서관은 서무담당”을 “도서관은 서무담당,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담당”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서관은 도서관장”을 “사업소는 사업소장”으로, “주무”를 “행정민원담당”으로 한다.

[별표 2]

동장의 직급(제10조 관련)

기 관 명	직 위	직 급
대연제1동주민센터	대연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대연제3동주민센터	대연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대연제4동주민센터	대연4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대연제5동주민센터	대연5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대연제6동주민센터	대연6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용호제1동주민센터	용호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용호제2동주민센터	용호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용호제3동주민센터	용호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용호제4동주민센터	용호4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용당동주민센터	용당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감만제1동주민센터	감만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감만제2동주민센터	감만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우암동주민센터	우암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문현제1동주민센터	문현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문현제2동주민센터	문현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문현제3동주민센터	문현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문현제4동주민센터	문현4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별표 3]

분 장 사 무 표

2013.7.1. 예정

실·과별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 예술진흥 시책 수립시행 2. 향토문화 발굴육성 3. 문화예술 사업 지원단체 지도육성 4. 종무행정 및 향교업무 전반 5. 유·무형 문화재 보호관리 6. 문화재 촬영, 모조복사, 녹음허가 등 7. 문화재 매매업소 허가 및 사후관리 8. 구사편찬 9. 공연장 등록 및 사후관리<2000.4.10><2003.7.5> 10. 출판사, 인쇄사 신고 및 사후관리<개정 2003.7.5> 11. 간행물 제출에 관한 업무<개정 2003.7.5> 12. 문고(도서관) 설립신고 및 사후관리<개정 2010.12.30> 13. 관광지내 조성사업 시행허가<개정 2000.4.10> 14.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정 2000.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지정의 취소, 변경지정 신청 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변경승인 신청 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고19. 삭제<2002.12.30> 15. 남구 캐릭터 사업 등에 관한 사항<2000.9.25> 16. 관광지안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17. 여행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30> 18. 관광편의시설업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지정 및 사후관리 19. 시민의 날 행사 20. 기타 관광 행정에 관한 사항 2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개정 2010.12.30> 22. 구보 발행 23. 국정, 시정, 구정시책홍보, 선전 24.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25. 구정홍보용 사진촬영 관리<개정 2010.12.30> 26. 정기 행정간행물 납본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7. 유통관련업(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게임제공업 등) 등록, 변경 및 지도·관리<2003.7.5> 28.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29. 영화상영관 등록 및 지도감독<2003.7.5> 30. 영화상영 신고<2003.7.5> 31. 관광사업 계획(변경) 승인<2005.12.29> 32. 관광숙박업 등록(변경), 사후관리, 행정처분<2005.12.29> 33. 국제회의업 등록(변경), 사후관리, 행정처분<2005.12.29> 34.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변경), 사후관리, 행정처분<2005.12.29> 35. 구 체육회 운영 및 체육에 관한 사항<2006.12.20.신설> 36. 체육공원 조성 및 관리<2006.12.20.신설>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2006.12.20.신설> 38. 구 실업보령팀 관리<2006.12.20.신설> 39.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신설 2010.12.30> 40.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0.12.30> 41. 잡지 외 정기간행물 사업자 신고<신설 2010.12.30> 42. 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43.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신설> 44.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신설>

[별표 3]

분 장 사 무 표

실·과별	분 장 사 무
주민지원과 <개정 2013. 7.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생활지원 종합계획수립 및 수행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활용 및 평가 3. 사회복지관 관리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총괄 4.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개정2012. 7.13> 4-1.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설2012. 7.13> 5. 주민소득특별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관리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관리<개정2012. 7.13> 7. 재해구호업무 총괄 8. 국·과 주요업무 및 의회관련업무 9. 서무, 회계, 예산, 보안(총무계획) 10.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개정2012.7.13> 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 12. 지역복지자원 발굴, 관리, 동원, 조정 및 복지인프라 구축 관리 13. 지역특수사업 개발,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 14.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 후원자 발굴 및 결연사업 관리 15.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개정 2012.7.13> 15-1.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복무 및 회계 관리<신설 2012.7.13> 16. 이웃돕기(성금포함), 긴급복지 지원사업 17. 복지콜센터(129),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개정2012. 7.13> 18.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 및 관리 19. 저소득층자녀장학금 관리 및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계정 포함) 총괄 20.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체계(네트워크) 구축 21. 취약계층 관리 및 지원 <개정2012.7.13> 22. 주거복지(영구임대, 매입임대)와 관련된 업무 23.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2008.5.10.신설> 24. 사회복지전달체계 추진 총괄<2008.5.10.신설> <개정2012.7.13> 25. 사회복지기금 총괄 및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관리<2008.5.10.신설> 26. 의사상자 관리<신설2012.7.13> 27. 자원봉사계획 수립,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지원<신설2012.7.13> 28. OK주민서비스(8대 서비스 영역)업무 총괄<신설2012.7.13> 29. 희망복지지원 종합계획 수립<신설2012.7.13> 30.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신설>

[별표 3]

분 장 사 무 표

실·과별	분 장 사 무
주민복지과 <개정 2013. 7.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에 관한사항 2. 노인복지기금 및 노인단체 지원관리 3. 경로당 관리 및 운영지원 4.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5.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취업지원 및 노인자원봉사 5-1. 시니어클럽 관리 및 지도감독<신설2012.7.13> 6. 경로식당(무료급식 포함), 노인교실 운영지원 7. 각종 노인복지수당(기초노령연금 등) 지급관리 및 보장결정(소득, 재산, 인적사항 관리 제외)<개정 2008.11.17, 2010.12.30, 2012.12.21> 8. 매장 및 묘지, 화장장, 납골당에 관한 사항 9. 서무, 회계, 예산, 보안(총무계획) 10. 업무보고, 지시사항, 목표관리, 혁신 등 부서운영 총괄 11. 여성정책평가, 여성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사항, 12. 건전가정 육성 및 건강가정지원사업<개정2012.7.13> 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개정 2008.11.17> <개정 2012.7.13> 14.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단체 지원관리<개정2012.7.13> 15. 성매매피해자 지원 및 요보호여성 보호, 성희롱예방<개정2012.7.13> 16. 한부모가정 보호·지원 및 보장결정(소득, 재산, 인적사항 관리 제외) <개정 2008.11.17, 2012.12.21> 17. 기타 여성복지에 관한사항 18. 출산장려사업 및 아이돌보미사업 추진<개정2012.7.13> 19. 보육계획수립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개정 2012.12.21> 20. 어린이집 설치(변경)인가 및 휴·폐지 신고<개정 2012.12.21> 21. 공립어린이집 위탁<개정2012.12.21> 22. 어린이집 각종 보조금 등 지원 및 관리<개정 2012.12.21> 23.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및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장결정 (소득, 재산, 인적사항 관리 제외) <개정2010.12.30, 2012.12.21> 24. 보육법인 지도감독 및 관리 <개정 2010.12.30, 2012.12.21>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관련업무<장애인 제외> 26. 아동복지 행정의 종합계획.조정 27. 아동복지시설 및 법인 관리, 지원<개정2012.7.13> 27-1. 아동복지시설 설치(변경)신고<신설 2012.12.21> 27-2.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신설 2012.12.21> 28. 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사항 29. 요보호아동에 관한사항 30. 다문화가족 지원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2008.5.10.신설> <개정2012.7.13>

[별표 3]

분 장 사 무 표

실·과별	분 장 사 무
주민복지과 <개정 2013. 7.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에 관한사항 2. 노인복지기금 및 노인단체 지원관리 3. 경로당 관리 및 운영지원 4.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5.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취업지원 및 노인자원봉사 5-1. 시니어클럽 관리 및 지도감독<신설2012.7.13> 6. 경로식당(무료급식 포함), 노인교실 운영지원 7. 각종 노인복지수당(기초노령연금 등) 지급관리 및 보장결정(소득, 재산, 인적사항 관리 제외)<개정 2008.11.17, 2010.12.30, 2012.12.21> 8. 매장 및 묘지, 화장장, 납골당에 관한 사항 9. 서무, 회계, 예산, 보안(총무계획) 10. 업무보고, 지시사항, 목표관리, 혁신 등 부서운영 총괄 11. 여성정책평가, 여성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사항, 12. 건전가정 육성 및 건강가정지원사업<개정2012.7.13> 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개정 2008.11.17> <개정 2012.7.13> 14.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단체 지원관리<개정2012.7.13> 15. 성매매피해자 지원 및 요보호여성 보호, 성희롱예방<개정2012.7.13> 16. 한부모가정 보호·지원 및 보장결정(소득, 재산, 인적사항 관리 제외) <개정 2008.11.17, 2012.12.21> 17. 기타 여성복지에 관한사항 18. 출산장려사업 및 아이돌보미사업 추진<개정2012.7.13> 19. 보육계획수립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개정 2012.12.21> 20. 어린이집 설치(변경)인가 및 휴·폐지 신고<개정 2012.12.21> 21. 공립어린이집 위탁<개정2012.12.21> 22. 어린이집 각종 보조금 등 지원 및 관리<개정 2012.12.21> 23.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및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장결정 (소득, 재산, 인적사항 관리 제외) <개정2010.12.30, 2012.12.21> 24. 보육법인 지도감독 및 관리 <개정 2010.12.30, 2012.12.21>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관련업무<장애인 제외> 26. 아동복지 행정의 종합계획.조정 27. 아동복지시설 및 법인 관리, 지원<개정2012.7.13> 27-1. 아동복지시설 설치(변경)신고<신설 2012.12.21> 27-2.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신설 2012.12.21> 28. 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사항 29. 요보호아동에 관한사항 30. 다문화가족 지원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2008.5.10.신설> <개정2012.7.13>

[별표 3]

분 장 사 무 표

실·과별	분 장 사 무
주민복지과	3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신설 2010.10.1> <개정 2012.12.21> 32.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신설2012.7.13> 33. 노인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2012.7.13> 34.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신설2012.7.13> 35. 여성폭력예방사업 및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관리<신설2012.7.13> 36.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 지원 및 관리<신설2012.7.13> 37. 아동급식 지원 관리<신설2012.7.13> 38.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수급자책정 제외)<신설 2012.12.21> 39.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신설 2012.12.21> 40. 보육교직원 임면, 경력 및 보수교육 관리<신설 2012.12.21> 41.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및 사후관리<신설 2012.12.21>

[별표 3]

분 장 사 무 표

실·과별	분 장 사 무
<p>생활보장과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정기조사 및 계획수립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급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및 부정수급자 관리 3.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시비 특별지원사업 4.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관련된 업무 5.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급여증 발급 등 자격관리 6.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대불금, 부당이득금 등 사후관리 7. 행려자 및 행려환자 관리,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8.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9.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채권관리 10. 의료급여 관리요원 관리 11. 기타 의료급여와 관련된 업무 12.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관리 13. 서무, 회계, 예산, 보안(총무계획) 14.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변경·보장 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규조사 :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기초노령, 장애인복지, 차상위, 나. 보장 및 변경 결정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장애 제외) 1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과 관리 및 자활지원 연계 1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수립 및 확인조사 17. 복지급여대상자 자격관리 및 해당부서 통보 18. 복지상담실 운영, 동 복지상담창구 운영지원 19.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20. 방문민원 초기상담, 각종 증명서 발급민원 21. 정부양곡 지원 관련 업무 2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23. 공적자료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양의무자, 자동차) 24. 희귀난치성질환자, 소아암환자 소득재산조사 25. 입양아동 책정, 중지 및 결정 통보 26. 행복e음 시스템 자료 정비 27.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28.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장 배치관리 및 급여지원 29.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30. 자활협의체 관리, 근로장려금, 근로유지형 사업총괄 31.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단 관리 32.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생업자금 융자 3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지원 대상자 소득, 재산조사 34. 임대주택 입주자격여부 소득, 재산조사 35. 타법 의료급여대상자 소득, 재산조사 36. 장애인 복지계획 수립 37.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별표 3]

분 장 사 무 표

실·과별	분 장 사 무
생활보장과 <신설>	38.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지급관리 및 보장결정(소득, 재산, 인적사항 관리 제외) 39.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관련업무<장애인만 해당> 41. 장애인 일자리사업 42.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록 현황관리, 재활보조기구 구입 지원 4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업무 4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변경)신고 45.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6.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47. 장애인지원 바우처 사업 48. 부랑인 및 노숙인 단속

[별표 3]

분 장 사 무 표

실·과별	분 장 사 무
시설관리 사업소 <신설>	1.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문서의 수발· 보안· 공인관리· 회계· 예산에 관한 사항 3.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4. 소속 직원의 인사· 복무· 당직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6.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기획, 개발, 홍보 및 운영 7.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운용 8. 국민체육센터 회원 및 강사 등 인력 관리 9. 시설관리사업소 내 영조물 관리 10.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가스 시설 관리 11. 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및 비품 관리 12.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 정화용 화학약품 및 수질 관리 13. 시설물 홍보에 관한 사항 14. 시설물 이용자 안전에 관한 사항 15. 백운포체육공원 조성, 운영 및 관리 16. 오륙도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 17. 스카이워크 운영 및 관리 18. 기타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743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94	447	17	38	28	164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635	405	12	33	21	16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3	1	1		
서 기 관	3	2	1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44	20	2	3	2	17
행정사무관	28	13	2		1	12
시설사무관	3	3				
사서사무관	1				1	
의무사무관	2			2		
녹지사무관	1	1				
환경 또는 보건사무관	1	1				
행정 또는 시설사무관	3					3
행정 또는 농업 또는 녹지사무관	1					1
행정 또는 보건 또는 간호사무관	1			1		
행정 또는 약무 또는 간호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					1
행정 또는 농업사무관	1	1				
행정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계	구분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6급 소계		146	118	2	5	4	17
행정주사		88	70	2		2	14
세무주사		11	11				
사회복지주사		8	8				
시설주사		10	10				
공업주사		1	1				
방송통신주사		1	1				
전산주사		1	1				
환경주사		1	1				
녹지주사		2	2				
간호주사		1			1		
약무주사		1			1		
사서주사		2				2	
행정 또는 사회복지주사		7	4				3
행정 또는 공업주사		1	1				
행정 또는 시설주사		3	3				
행정 또는 보건주사		2	1		1		
행정 또는 환경주사		2	2				
수의 또는 보건주사		1	1				
간호 또는 보건주사		1			1		
농업 또는 해양수산주사		1	1				
보건 또는 약무 또는 의료기술주사		1			1		
7급 소계		190	125	4	11	4	46
행정주사보		105	63	4	1	3	34
세무주사보		14	14				
사회복지주사보		21	9				12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시설주사보		18	18				
공업주사보		3	3				
방송통신주사보		1	1				
전산주사보		2	2				
환경주사보		4	4				
녹지주사보		2	2				
간호주사보		5			5		
식품위생주사보		2	2				
보건주사보		5	3		2		
해양수산주사보		1	1				
의료기술주사보		2			2		
사서주사보		1				1	
간호 또는 보건주사보		1			1		
환경 또는 보건주사보		1	1				
환경 또는 보건 또는 공업주사보		1	1				
행정 또는 녹지주사보		1	1				
8급 소계		194	129	3	12	8	42
행정서기		107	62	3	2	4	36
세무서기		17	17				
사회복지서기		14	8				6
시설서기		17	17				
공업서기		7	7				
방송통신서기		3	3				
전산서기		5	5				
환경서기		1	1				
녹지서기		3	3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계	구분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농업서기		1	1				
간호서기		4			4		
보건서기		5	2		3		
의료기술서기		2			2		
사서서기		4				4	
행정 또는 시설서기		1	1				
환경 또는 공업서기		1	1				
보건 또는 식품위생서기		1	1				
간호 또는 보건서기		1			1		
9급 소계		55	9		1	3	42
행정서기보		27				1	26
세무서기보		3	3				
사회복지서기보		17	1				16
시설서기보		3	3				
전산서기보		1				1	
의료기술서기보		1			1		
공업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1				
행정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1	1				
사서서기보		1				1	
별정직 계		2	1		1		
7급상당 소계		2	1		1		
비서요원		1	1				
결핵검사요원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계	구분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기능직 계		56	40	5	4	7	
6급 소계		4	4				
전기장		1	1				
기계장		1	1				
사무실무장		1	1				
운전장		1	1				
7급 소계		11	9	1	1		
기계장		1	1				
운전장		6	4	1	1		
사무실무장		1	1				
농림장		1	1				
방호장		2	2				
8급 소계		21	14	2	1	4	
기계원		1				1	
전기원		3	1			2	
운전원		5	5				
사무실무원		9	5	2	1	1	
조무원		2	2				
통신원		1	1				
9급 소계		20	13	2	2	3	
사무실무원		9	4	2		3	
운전원		8	7		1		
전화상담원		2	2				
보건원		1			1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744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도서관”을 “사업소”로 한다.

제4조제1항 구분청 대상사무 전결처리사항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공통사항 중 “도서관”을 “사업소”로 한다.
- 문화체육과 단위업무 중 제25호~제28호를 삭제한다.
- 평생교육과 단위업무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3호~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 육성
 4. 청소년 보호
 5. 정보화 추진
 6. 정보화기기 도입
 7. 정보화교육 및 훈련
 8. 업무 정보화 추진
 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0. 전산시설장비 관리
 11. 업무지도
 12. 전산정보망 관리
 13. 정보자료 관리
 14. 정보화 계획
 15. 인터넷서비스 구축운영
 16. 정보화평가 및 정보지식인대회

○ 주민지원과 단위업무 중 제2호, 제11호~제14호, 제18호를 삭제하고, 제2호~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복지연계 지원
3.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사항
4. 복지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이재민 구호
7. 국가 보훈대상자 지원
8. 저소득주민 자립 지원
9. 자원봉사업무
10. 긴급복지 지원
1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 의사상자 및 의로운 구민 보호
13. 드림스타트

○ 주민복지과 단위업무 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6호~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여성정책
7. 여성보호 및 지원
8. 저출산대책
9. 아동복지
10. 보 육
11. 결혼중개업 관리
12. 다문화가족 지원
1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생활보장과”를 신설하여 단위업무 제1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2. 의료급여
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책정
4. 복지상담실·민원실 운영관리
5. 자활사업
6. 장애인복지
7. 노숙인, 부랑인 등 보호

- 별표3 표지의 제목 “도서관”을 “사업소”로 한다.
-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단위업무 제1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 2. 백운포체육공원 조성·운영·관리
 - 3. 오륙도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 4. 스카이워크 운영·관리
- 부서별 단위업무 신설 등 조정에 따른 세부업무는 별지와 같이 한다.(엑셀)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3 표지의 제목 “도서관”을 “사업소”로 한다.
-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단위업무 제1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 2. 백운포체육공원 조성·운영·관리
 - 3. 오륙도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 4. 스카이워크 운영·관리
- 부서별 단위업무 신설 등 조정에 따른 세부업무는 별지와 같이 한다.(엑셀)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 령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남구 훈령 제282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배정) 별표1, 별표3, 별표4,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도서관”을 “사업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서관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남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도서관”을 “사업소”로 하고, 별표2 승용 차량 기준정수표 중 구 본청의 기준정수 “12대”를 “11대”로, “도서관 1대”를 “사업소 2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남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별표 무기계약근로자의 부서별·직종별 정수표 중 “문화체육과”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주민지원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권역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대연1동, 대연2동”을 “대연1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우암1동, 우암2동”을 “우암동”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3.5.1, 2013.7월

구 본청 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부서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내용
기획감사실	합계	27	
	5급	1	행정직 1
	6급	8	행정직 8
	7급	7	행정직 5, 시설직(토목) 2
	8급	10	행정직 9, 행정 또는 시설직(건축) 1
	기능직	1	7급 1(사무실무장 1)
총무국 총무과	합계	28	
	정무직	1	정무직 1(구청장 1)
	3급	1	행정직 1(부구청장 1)
	4급	1	행정직 1
	5급	1	행정직 1
	6급	8	행정직 8
	7급	6	행정직 6
	8급	7	행정직 6, 방송통신직 1
	별정직	1	7급상당 1(비서요원 1)
	기능직	2	9급 2(사무실무원 2)
총무국 재무과	합계	26	
	5급	1	행정직 1
	6급	6	행정직 5, 방송통신직 1
	7급	5	행정직 4, 방송통신직 1
	8급	5	행정직 2, 방송통신직 2, 공업직(전기) 1
기능직	9	6급 1(운전장 1), 7급 2(기계장 1, 운전장 1), 8급 2(운전원 1, 통신원 1), 9급 4(전화상담원 2, 운전원 2)	
총무국 세무1과	합계	22	
	5급	1	행정직 1
	6급	6	세무직 6
	7급	7	세무직 7
	8급	7	세무직 6, 전산직 1
9급	1	세무직 1	

부서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내용
총무국 세무 2과	합계	24	
	5급	1	행정직 1
	6급	5	세무직 5
	7급	7	세무직 7
	8급	10	세무직 10
	9급	1	세무직 1
총무국 문화체육과	합계	14	
	5급	1	행정직 1
	6급	5	행정직 5
	7급	5	행정직 5(계약직 1 포함)
	8급	2	행정직 2
	기능직	1	6급 1(기계장 1)
총무국 민원여권과	합계	22	
	5급	1	행정직 1
	6급	6	행정직 6
	7급	6	행정직 6
	8급	7	행정직 6(계약직 1 포함), 전산직 1
	기능직	2	8급 1(운전원1), 9급 1(사무실무원 1)
총무국 평생교육과 <2013.1.1신 설>	합계	14	
	5급	1	행정직 1
	6급	3	행정직 2, 전산직1
	7급	4	행정직 2, 전산직 2
	8급	6	행정직 3, 전산직 3
주민생활국 주민지원과	합계	18	
	4급	1	행정직 1
	5급	1	행정직 1
	6급	6	행정직 2, 사회복지직 2, 행정 또는 사회복지직 2
	7급	5	행정직 4, 사회복지직 1
	8급	4	행정직 2, 사회복지직 2
	9급	1	행정 또는 사회복지직 1

부서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내용
주민생활국 주민복지과	합계	16	
	5급	1	행정직 1
	6급	5	행정직 4, 사회복지직 1
	7급	6	행정직 3, 사회복지직 3
	8급	4	행정직 4
주민생활국 생활보장과 <2013.7.1신설>	합계	28	
	5급	1	행정 또는 사회복지직 1
	6급	8	행정직 1, 사회복지직 5, 행정 또는 사회복지직 2
	7급	8	행정직 3, 사회복지직 5
	8급	10	행정직 4, 사회복지직 6
	9급	1	사회복지직 1
주민생활국 환경위생과	합계	21	
	5급	1	환경 또는 보건직 1
	6급	4	환경직 1, 행정 또는 환경직 1, 행정 또는 보건직 1, 보건 또는 수의직 1
	7급	11	행정직 1, 환경직 3, 보건직 3, 식품위생직 2, 환경 또는 보건직 1, 환경 또는 보건 또는 공업직(화공) 1
	8급	4	보건직 2, 공업직(화공) 1, 보건 또는 식품위생직 1
	기능직	1	9급 1(운전원 1)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합계	25	
	5급	1	행정직 1
	6급	6	행정직 5, 행정 또는 환경직 1
	7급	5	행정직 3, 환경직 1, 공업직(기계) 1
	8급	7	행정직 5, 환경직 1, 환경 또는 공업직(화공) 1
	기능직	6	7급 2(운전장 2), 8급 3(운전원 2, 사무실무원 1), 9급 1(운전원 1)
주민생활국 경제진흥과 <2013.1.1신설>	합계	15	
	5급	1	행정 또는 농업직 1
	6급	4	행정직 3, 농업 또는 해양수산직 1
	7급	4	행정직 2, 해양수산직 1, 공업직(화공) 1
	8급	6	행정직 3, 공업직 2(화공1, 기계1), 농업직 1

부서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내용
주민생활국 공원녹지과 <2013.1.1신설>	합계	14	
	5급	1	녹지직 1
	6급	4	행정직 2, 녹지직 2
	7급	3	행정 또는 녹지직 1, 녹지직 2
	8급	4	행정직 1, 녹지직 3
	기능직	2	7급 2(농림장 1, 운전장 1)
도 시 국 교통행정과	합계	30	
	4급	1	기술직 1
	5급	1	행정직 1
	6급	8	행정직 7, 행정 또는 공업직(기계) 1
	7급	7	행정직 7
	8급	6	행정직 3, 세무직 1, 공업직(기계) 1, 시설직(토목) 1
	9급	1	세무직 1
	기능직	6	6급 1(사무실무장 1), 8급 3(조무원 2, 사무실무원 1), 9급 2(사무실무원 1, 운전원1)
도 시 국 도시안전과 <2013.1.1신설>	합계	30	
	5급	1	행정직 1
	6급	8	행정직 5 , 시설직(토목) 1, 공업직(전기) 1, 행정 또는 시설직(토목) 1
	7급	7	행정직 5, 시설직(토목) 1, 공업직(전기) 1
	8급	6	행정직 3 , 시설직(건축) 1, 공업직 2 (전기 1 , 기계 1)
	9급	1	공업(전기) 또는 방송통신직 1
	기능직	7	6급 1(전기장 1), 8급 4(전기원 1, 운전원 1, 사무실무원 2), 9급 2(운전원 2)
도 시 국 건설과	합계	27	
	5급	1	시설직(토목) 1
	6급	7	행정직 3, 시설직(토목) 4
	7급	8	행정직 2, 시설직(토목) 6
	8급	10	행정직 3, 시설직(토목) 7
	9급	1	시설직(토목) 1

부서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내용
도시국 건축과	합계	25	
	5급	1	시설직(건축) 1
	6급	6	행정직 2, 시설직(건축) 2, 행정 또는 시설직(건축) 2
	7급	8	행정직 2, 시설직 6(토목1, 건축5)
	8급	7	행정직 3, 시설직(건축) 4
	9급	1	시설직(건축) 1
	기능직	2	7급 2(방호장 2)
도시국 토지관리과	합계	21	
	5급	1	시설직(지적) 1
	6급	5	행정직 2, 시설직(지적) 3
	7급	6	행정직 3, 시설직(지적) 3
	8급	7	행정직 3, 시설직 4(토목1, 지적3)
	9급	1	시설직(건축) 1
	기능직	1	8급 1(사무실무원 1)

[별표 3] 개정 2012.3.12, 2013.7월

보건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내용
보건소	합계	38	
	4급	1	기술직 1
	5급	3	행정 또는 보건 또는 간호직 1, 의무직 2
	6급	5	간호직 1, 약무직 1, 행정 또는 보건직 1, 보건 또는 약무 또는 의료기술직 1, 간호 또는 보건직 1
	7급	11	행정직 1, 간호직 5, 보건직 2, 의료기술직 2, 간호 또는 보건직 1
	8급	12	행정직 2, 간호직 4, 보건직 3, 의료기술직 2, 간호 또는 보건직 1
	9급	1	의료기술직 1
	별정직	1	7급상당 1(결핵검사요원 1)
	기능직	4	7급 1(운전장 1), 8급 1(사무실무원 1) 9급 2(운전원 1, 보건원 1)

[별표 4]개정2012.3.12, 2013.7월

사업소의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4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내용
도서관	합계	19	
	5급	1	사서직 1
	6급	3	행정직 1, 사서직 2
	7급	2	행정직 1, 사서직 1
	8급	5	행정직 1, 사서직 4
	9급	3	행정직 1, 전산직 1, 사서직 1
	기능직	5	8급 2(기계원 1, 전기원 1), 9급 3(사무실무원3)
시설관리 사업소 <2013.7.1신 설>	합계	9	
	5급	1	행정직 1
	6급	1	행정직 1
	7급	2	행정직 2
	8급	3	행정직 3
	기능직	2	8급 2(전기원 1, 사무실무원 1)

[별표 5] 개정 2012.12.21, 2013.7월

동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5항 관련)

동 별	직급별	정 원	직 렬 별 정 원 내 용
대연1동	합 계	10	
	5 급	1	행정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8 급	2	행정직 1, 사회복지직 1
	9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대연3동	합 계	12	
	5 급	1	행정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8 급	4	행정직 4
	9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대연4동	합 계	9	
	5 급	1	행정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8 급	2	행정직 2
	9 급	2	행정직 1, 사회복지직 1
대연5동	합 계	9	
	5 급	1	행정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4	행정직 3, 사회복지직 1
	8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9 급	-	-
대연6동	합 계	9	
	5 급	1	행정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2	행정직 2
	8 급	2	행정직 1, 사회복지직 1
	9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동 별	직급별	정 원	직 렬 별 정 원 내 용
용호1동	합 계	15	
	5 급	1	행정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8 급	5	행정직 4, 사회복지직 1
	9 급	5	행정직 4, 사회복지직 1
용호2동	합 계	10	
	5 급	1	행정 또는 시설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2	행정직 1, 사회복지직 1
	8 급	1	행정직 1
	9 급	5	행정직 4, 사회복지직 1
용호3동	합 계	10	
	5 급	1	행정직 1
	6 급	1	행정 또는 사회복지직 1
	7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8 급	2	행정직 2
	9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용호4동	합 계	8	
	5 급	1	행정 또는 농업 또는 녹지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2	행정직 2
	8 급	2	행정직 2
	9 급	2	행정직 1, 사회복지직 1
용 당 동	합 계	8	
	5 급	1	행정 또는 시설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2	행정직 2
	8 급	3	행정직 3
	9 급	1	사회복지직 1

동 별	직급별	정 원	직 렬 별 정 원 내 용
감만1동	합 계	10	
	5 급	1	행정직 1
	6 급	1	행정 또는 사회복지직 1
	7 급	2	행정직 2
	8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9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감만2동	합 계	8	
	5 급	1	행정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2	행정직 2
	8 급	2	행정직 2
	9 급	2	행정직 1, 사회복지직 1
우암동	합 계	11	
	5 급	1	행정 또는 약무 또는 간호 또는 의료기술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4	행정직 2, 사회복지직 2
	8 급	3	행정직 3
	9 급	2	행정직 1, 사회복지직 1
문현1동	합 계	9	
	5 급	1	행정 또는 시설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8 급	2	행정직 2
	9 급	2	행정직 1, 사회복지직 1
문현2동	합 계	8	
	5 급	1	행정직 1
	6 급	1	행정 또는 사회복지직 1
	7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8 급	2	행정직 2
	9 급	1	사회복지직 1

동 별	직급별	정 원	직 렬 별 정 원 내 용
문현3동	합 계	9	
	5 급	1	행정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2	행정직 2
	8 급	2	행정직 1, 사회복지직 1
	9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문현4동	합 계	9	
	5 급	1	행정직 1
	6 급	1	행정직 1
	7 급	3	행정직 2, 사회복지직 1
	8 급	2	행정직 2
	9 급	2	행정직 1, 사회복지직 1